「마약류 취급보고」 계도기간 안내사항

(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)

❑ 취급자 '전산보고' 계도(적응)기간 운영

○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「마약류 취급보고」 제도는 '18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.

○ 시행 후, **취급일 기준 '18년 12월 31일까지**는 다음과 같이 취급자를 위한 전산보고 계도(적응)기간으로 운영합니다.

- 취급보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고 과정상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잘못 보고를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하도록 합니다.
- 취급자는 시정사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할기관에 알립니다.

'계도(적응)기간'의 의미

✔ 계도(적응)기간 일지라도 마약류취급자는 모든 취급내역을 법률에 따라 전산보고 하여야 합니다.

✔ 다만, 비의도적인 실수,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취급내역 누락, 보고정보 누락 또는 잘못된 입력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정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❑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

○ 마약류 취급정보를 **허위·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**한 경우

○ 관할기관의 **계도(시정지시)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**

- 취급자가 일체 보고하지 아니하여 1차 계도(시정지시)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체 보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조치

❑ 중점관리품목 '일련보고' 계도(적응)기간 운영

○ 중점관리품목(마약, 프로포폴) **의무보고 항목인 '일련번호' 오류**에 대해서는 **'19년 6월 30일까지** 계도(적응)기간을 운영합니다.

* 이 경우 리더기 구비, 사용단계 일련번호 일치 어려움 등 취급자 마다 보고 환경이 달라 일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도합니다.